



제311회 임시회  
2012. 6. 13.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2년 6월 4일
- 회부일자 : 2012년 6월 5일

## 3. 제안이유

-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북도 장학시설 '청람재'와 대통령 별장인 '청남대'의 시설물 명칭 유사성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시설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## 4. 주요내용

- 청람재의 시설명칭 변경
  - 청람재 ⇒ 충북학사 청람재(안 제1~2조)
- 기타 현실 불부합 조문 정비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- 충청북도학사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충북미래관 내에 있는 '충북학사'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'청람재'가 있으며 두 시설

모두 (재)충북학사에서 운영하고 있음

- 동 조례안은 청주시 소재 장학시설인 '청람재'의 명칭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별장 '청남대'와 명칭이 유사함에 따라 일부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민원편의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청람재의 명칭을 변경하고,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'청람재'를 '충북학사 청람재'로 하여 장학시설인 동 시설의 기능을 명칭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였고, 대통령 별장인 '청남대'와의 혼동을 예방하였으며,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'기타'를 '그 밖에'로, '규정에 의한'을 '규정에 따른'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됨